

□ ARS투표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대표경력 허용기준(案)

1) 글자 수는 25자 이내만 인정한다.

- 2개 경력 글자 수 합산 기준 (전·현 표기는 합산에서 제외)

2)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불허한다.

- ※ 후보자 인지도보다 전·현직 대통령 실명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제8회 지방선거·제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적용)

3) 임의적이거나 임시·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

- 기관 및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하더라도 존속 1년 이상의 기구 또는 단체의 경우만 허용하고, 존속 1년 미만인 기구 또는 단체의 경력 불허함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특수법인 등을 허용하고, 임의단체 중 활동 실적과 규모 등이 국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경력을 인정함

(2024.2.2.(금) 제216차 최고위원회의 내용)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특수법인(특별법)
설립자 재산 출연(약 10억 원)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2인 이상 설립자 정관 작성 주무관청 허가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이 주 사업의 40% 이상	법률 근거 설립
임의단체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 1년 이상 공익활동 (국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			

4) 경력 입증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 (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경력만 인정함 단, 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은 경력 인정 단, 직렬 변경에 따라 개별 직함으로서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이라도 해당 기관·단체에서의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시 원하는 경력을 사용 가능함
- 급여수급 경력만 인정함
단, 시민단체는 위원장·본부장 등 대표자나 실질 운영자의 경우 급여 수급 없이 활동하는 경우와 위촉직과 같이 한시적, 임의적인 경력이 상존해 기존 기준은 유지한 채 각급 선관위의 판단으로 개별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5) 특정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 후원단체, 연구단체, 기념 사업회 등의 영리·비영리단체의 대표 경력은 불허한다.

- 단, 재직증명, 법인등기부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의 포함은 불가함

6)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법적등록 명칭 또는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

- 청와대·대통령실 근무경력 : '대통령비서실 ○○○'으로 통일
-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촛불정부 등 : 불허
-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 등 : 불허
- ○○○를사랑하는모임 회장, ○사모 카페 운영자, ○사모 지부장 등 : 불허

- ○○○대통령후보 유세단장, ○○○대통령후보 특보 : 불허
- ○○○시·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장관 정책특보 등 : 불허
- 국회의원 보좌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 허용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를 반드시 표기 (제22대 총선 공관위 기준)

7) 소속기관 단체명과 직함(공식적인 직위)은 함께 사용한다.

- (예) 경실련 임원 : 불허 → 경실련 사무처장 등

8) 학력·학위의 경우 학교명과 함께 사용한다.

- 정치학 박사 : 불허 → ○○대 정치학 박사 : 허용

9) 출마경력 시 당명, 선거구명을 함께 사용한다. (***예비후보는 불허**)

- 종로구의회 예비후보, 민주당 후보, 19대 국회의원 후보 : 불허
-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허용

10) 당직경력 사용은 허용한다. 단, 특정 정치인 성명 포함은 불허한다.

(제22대 총선 공관위 기준)

- ○○○ 당대표 특별보좌관 : 불허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 : 허용
-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경력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재직기간 무관**)
- 지역위원회 경력 허용 기준 :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정식 임명된 당직의 공식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당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만 허용

11) 1 ~ 10 외의 허용·불허 기준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